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200111 홈페이지 : www.kgbnet.net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08.0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06.01. 이 메 일 : kgbnet_master@kgbnet.net



정 보 공 개 서

케이지비(주)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 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케이지비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케이지비 빌딩)

TEL: 02-4024-114 . FAX: 02-424-2245

사업운영부 KGB 담당 : 031-799-3153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 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케이지비 (주)	KGB외 1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2.07.07	1992.07.20.	박해돈,유미숙	02-4024-114	02-424-2245
	법인등록번호	110111-0877550	사업자등록번호	219-81-06418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박해돈 케이지비(주)	KGB 외 1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해돈,유미숙	02-4024-114	02-402-224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대표이사)	유미숙 케이지비(주)	KGB 외 1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해돈,유미숙	02-4024-114	02-402-224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사내이사)	박해돈 예스2424(주)	yes2424 외 1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유미숙	02-4024-114	02-402-224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유미숙 예스2424(주)	yes2424 외 1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유미숙	02-4024-114	02-402-224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지배인)	정초영 케이지비(주)	KGB 외 1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해돈, 유미숙	02-4024-114	02-402-224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감사)	안진주 케이지비(주)	KGB 외 1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박해돈, 유미숙	02-4024-114	02-402-224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소		
사용인 (감사)	안진주 예스2424(주)	yes2424 외 1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유미숙	02-4024-114	02-402-224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예스2424 (주)	예스2424 외 1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유미숙	02-4242-114	02-431-2404
	법인등록번호	110111-3890773	사업자등록번호	212-81-8310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 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KGB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KGB	KOREA GOLDEN BOX

상 호	KGB 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30361-0000 외 다수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KGB	

KGB 브랜드 홍보를 하는 홈페이지는 kgbnet.net입니다.

기업이전 홈페이지는 kgbnet.net/company, kgbcompany.co.kr입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0년	6,690,959	2,087,447	4,603,512	1,628,743	59,479	-147,597
2021년	6,583,496	2,123,709	4,459,787	1,795,084	-79,535	-35,502
2022년	6,614,168	2,241,854	4,372,313	1,913,680	60,208	-37,473

그 근거자료는 별첨. 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박해돈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2019.03.14.~현재	케이지비(주) 사내이사/대표이사	그룹운영 경영관리
			2013.03.21.~현재	예스2424(주) 사내이사	경영관리
	유미숙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2018.09.28.~현재	케이지비(주) 대표이사	경영관리
			2013.03.21.~현재	예스2424(주) 대표이사	경영관리
	정초영	지배인	2018.09.28.~현재	케이지비 (주) 전무	경영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안진주	감사	2013.04.24.~현재	감사	회계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2.12.31.	3	1	6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 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케이지비 (주)	가맹사업 경영	1992.07.07. ~ 현재	KGB포장이사(등록번호:20080200111)영업 표지의 포장이사 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03.01.30. ~ 현재	yes2404(등록번호:20130113)영업표지의

				포장이사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에스2424 (주)	가맹사업 경영	2005.06.01. ~ 현재	yes2424(등록번호:20280284) 영업표지 포장이사 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4.01.01 ~ 현재	Ycap(등록번호:20140488)영업표지 포장이사, 화물운송 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KGB (상표권)	제39류 운송주선업 등 20종	2005.01.18. 출원 2006.04.07. 등록	출원번호 41-2005-0001260	KGB(주)	2026.04.07
			등록번호 제41-0130361-0000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KGB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1996년 7월 7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2년 7월 20일)

2. KGB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고려골 든박스	KGB	박해돈	1996.07.07 ~ 1999.12.31.	서울송파구 잠실본동 214-12 외
(주)고려골 든박스	KGB	박해돈	2000.01.01. ~2002.01.01.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진우리 111-1 케이지비빌딩 102호
케이지비 (주)	KGB	박해돈	2002.01.02. ~ 2007.01.25.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11-1 케이지비빌딩 102호
케이지비 (주)	KGB	조영일	2007.01.25. ~2009.02.27.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11-1 케이지비빌딩 102호
케이지비 (주)	KGB	박해돈,유미숙	2009.02.27. ~2015.08.26.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11-2 케이지비빌딩
케이지비 (주)	KGB	박해돈	2015.08.26. ~2018.9.28.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케이지비 (주)	KGB	유미숙	2018.09.28 ~ 2019.03.14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케이지비 (주)	KGB	박해돈,유미숙	2019.03.14 ~ 현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330번길 57 (케이지비 빌딩)

3. KGB 업종

영업표지	업종	
KGB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사	포장이사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KGB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0.12.31			2021.12.31.			2022.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15	115	0	114	114	0	117	117	0
서울	36	36	0	39	39	0	43	43	0
부산	6	6	0	6	6	0	6	6	0
대구	2	2	0	2	2	0	2	2	0
인천	5	5	0	3	3	0	4	4	0
광주	0	0	0	1	1	0	0	0	0
대전	2	2	0	2	2	0	2	2	0
세종	0	0	0	0	0	0	0	0	0
울산	2	2	0	2	2	0	2	2	0
경기	34	34	0	33	33	0	35	35	0
강원	5	5	0	4	4	0	2	2	0
충북	3	3	0	3	3	0	3	3	0
충남	1	1	0	1	1	0	1	1	0
전북	2	2	0	2	2	0	2	2	0
전남	1	1	0	0	0	0	0	0	0
경북	5	5	0	5	5	0	5	5	0
경남	9	9	0	9	9	0	8	8	0
제주	2	2	0	2	2	0	2	2	0

이사사업의 특성상 이사작업은 이사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주로 고객과의 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지며 고객이 사무실을 방문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차고지 확보, 포장자재 보관 창고 확보 등의 사유로 가맹점명과 실제 가맹점 사무실의 주소지는 불일치 할 수 있음. (다만, 실제 영업은 가맹점명에 기재된 영업거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특성상 영업지역 및 사무실 주소는 다를 수 있음)

5. 바로 전 3년간 KGB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0	113	9		7		115
2021	115	15		16		114
2022	114	15		12	1	117

6. KGB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 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KGB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0. 12. 31	2021. 12. 31	2022. 12. 31
가맹본부	케이지비 (주)	yes2404	20130113	이사	119/0	104/0	86/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에스2424 (주)	yes2424	20130284	이사	165/0	161/0	146/0
		Ycap (기존용달캡)	20140488	이사	14/0	12/0	10/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 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 말 가맹점 수	2022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17	확인불가						매출액 확인불가
서울	43	확인불가						

부산	6	확인불가						
대구	2	확인불가						
인천	4	확인불가						
광주	0	확인불가						
대전	2	확인불가						
세종	0	확인불가						
울산	2	확인불가						
경기	35	확인불가						
강원	2	확인불가						
충북	3	확인불가						
충남	1	확인불가						
전북	2	확인불가						
전남	0	확인불가						
경북	5	확인불가						
경남	8	확인불가						
제주	2	확인불가						

매출액 확인 불가 이유 : KGB 본사는 KGB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브랜드 사용에 대한 일정 금액을 받고 영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별도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자료를 직접 관리하거나 제출받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8. KGB포장이사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일수)
2022	117	3,321

9. 가맹 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나 지역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의 2022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KGB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KGB브랜드 외 당사의 yes2404 브랜드 지출내역이 포함된 금액임).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8 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386,642	 (비공개)	(비공개)	
광고	 (비공개)	 (비공개)	333,208	 (비공개)	(비공개)	
판촉	 (비공개)	 (비공개)	53,434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IBK기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IBK 기업은행	곤지암지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70	031-798-5775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최초가맹금과 보증금을 당사의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IBK기업은행에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치 방법은 IBK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케이지비(주)를 찾아 금액을 입력 하면 됩니다.] 당사 담당 직원과 IBK기업은행을 방문하여 예

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 없음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KGB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인허가 비용, 차량 구입 및 도색 비용, 점포의 임대비용, 포장자재 구입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갖추어야 할 장비나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보증금 포함)	가맹본부	예치 대상	확정금액
기타비용	가맹본부, 협력업체	예치 비대상	추정금액

1) 최초 가맹금중 가입비 및 전화권(A급 지역기준)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2,100				* 가입비 - 서울시 지역 1/4 구 : 5,500 2/4 구 : 11,000 - 지방 지역(서울시제외) A등급 : 11,000 B등급 : 8,800 C등급 : 5,500 D등급 : 2,200 -기업이전, 해외이사 등 특수 대리점: 11,000 *1588-2404 전화 사용권
가입비	11,000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 일 이후 ~ 영업 개시 일까지	법률로 규정된 가맹본부 귀책 사유 발생시	영업개시 이후	
전화권	1,100				

<기업이전, 해외이사 등 특수 가맹점은 전화권이 없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최초 가맹금 중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보증금	3,000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후 ~ 영업개시일까지	해지당시 본사미납금, 이사고객A/S, 해지 후 영업표지 등 미 제거, 기타 손해배상책임 등	전 가맹점 동일금액 적용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합계	6,300 ~ 15,100천원
가입비	2,200~11,000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별 차등)
전화권	1,100천원 (부가세 포함.)
보증금	3,000천원 (부가세 미포함)

<기업이전 가맹점은 전화권이 없어 최초 가맹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 물품 구입 및 임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 반환조건	비고
----	------	----	-------------	----

총계		2,985		차량 추가시 증가
차량 도색	협력업체	5톤 1대당 1,485 (우레탄 코팅비 포함)	도색완료 시 지급	CI통일을 위해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가 지정 하는 업체와 거래 필요 * 당사는 평당(3.3㎡) 매출 산정 할 수 없음
박스 등 이사 자재	협력업체	1,200 (5톤 1대 기준)	물품 주문 시 입금	
유니폼 기타	가맹본부	300 (5톤 1대 기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전국 가맹점 설치 예정지역을 사전에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가맹점사업희망자를 우선 배정하며, 가맹희망지역에 이미 다른 가맹점 사업자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희망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없는 인근 지역에 배정되도록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 화물 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 (지입차의 경우 : 위. 수탁계약서 제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한자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KGB 가맹점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최초 가맹금에 대해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동 광고, 판촉비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891~231				
상표사용료	케이지비 (주)	891/월	당월 10일		-	지역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서울지역 - 2/4 구 891 - 1/4 구 671 서울지역 외 - A등급 660 - B등급 506 - C등급 396 - D등급 231 기업이전 / 해외이사 등 특수대리점 880
		671/월				
		660/월				
		506/월				
		396/월				
		231/월				
		880/월				
전화사용료	케이지비 (주)	11/월	당월 10일		-	1588-2404
공동광고, 판촉비	케이지비 (주)	협의 결정	협의 결정			협의 결정
교육비 (정기교육, 맞춤형교육, 일반특별교육)	케이지비 (주)	33/월	당월 10일			
특별교육비 (품질 개선)	케이지비 (주)	33/월	교육전일			품질개선 특별교육 대상자
연체료	케이지비	당월상표사용료	당월 말일			월 상표사용료

	(주)	의 5%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케이지비 (주)	미납금 등의 24%				계약종료 후 미납금 등 적용
교육 불참 위약금	케이지비 (주)	300				정기교육 2회 연속 불참 시
식비 등 요구 수취 구상금	케이지비 (주)	수취금액의 2배	청구 후 10일 이내			식비, 음료비, 수고비 등을 고객에게 요구하여 수취한 경우

- 기업이전, 해외이사 등 특수 대리점은 전화사용료 비용이 없어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중 월 상표사용료, 전화사용료, 공동광고, 판촉비, 교육비 등 비용을 기일 내 납입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해 해당금액의 5%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위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시 상표사용료 등 미납금액을 해지완료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2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교육비는 교육 횟수와 지출비용에 따라 매년 재 산정 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 가맹금” 이라한다.)의 2022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서비스품질관리	-이사현장 평가, 해피콜 결과, 꾸중글 등록, A/S 처리, 기타 고객 불만, 본사 품질 기준 준수여부 등 서비스품질 평가 관리	매월 (수시)	

	-품질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후속조치(경고, 오더정지, 홈페이지 전화번호 삭제 등)		문의: 사업운영부 (031-799-3156)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허가 취득 사항	-사업자등록 유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유지	-휴폐업 조회 -재계약	
기본 (차량, 유니폼, 포장자재) 에 대한 유지관리	-기본사항에 대한 등급 구분하여 평가관리 -등급에 따라 품질평가에 반영하고 개선, 교체, 보수, 폐기 등 시정 요청	수시	
당사의 브랜드 유지 및 침해 여부	-허용된 범위 내 상표 사용 -해지 후 모든 영업표지 제거	발생시	
광고 시 당사 기준 준수 여부	-광고 등 영업활동 시 가맹점명, 홈페이지, 대표전화 기재 -홈페이지 제작 시 지정하는 규격, 로고, 가맹점명 등 기준 준수	수시	
경영지도	-품질관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진단 -특별교육을 통한 개별 경영지도 -개별 면담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경영지도	수시	
이사요금적정 여부	-적정요금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과다요금 적용여부 -해피콜, 현장방문 등 통해 확인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자동 갱신, 재계약 포함한다)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당사 또는 귀하가 계약 만료일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미수금은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 귀하가 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지신청서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상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KGB 운영권은 가맹본부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즉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 표와 상호 및 이에 관련된 모든 영업표지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거 및 폐기한 후 그 증빙(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당사에 제출하여 종료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① 차량에 표기된 모든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 및 문구 일체 제거와 KGB물류그룹 상징 바탕 도색의 색상 변경, 동일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도(이 경우 양도 계약서 제출)

② 포장자재에 표기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 및 문구 일체 제거 또는 폐기(재사용이 불가하도록 절단하여 폐기), 동일 브랜드 가맹점사업자에게 양도(이 경우 양수자로부터 양수 확인서를 받아 제출)

③. 서식류(서비스표 등 영업표지가 표기된 견적서, 계약서, 명함, 바인더, 견적용 파일 등)는 폐기하되 재사용이 가능한 서식류는 본사 반납 또는 동일 브랜드 사업자에게 양도(이 경우 양수자로부터 양수 확인서를 받아 제출)

④. 유니폼류는 가맹본부 반납 또는 폐기(폐기 증빙자료 제출), 동일 브랜드 가맹점 사업자에게 양도(이 경우 양수자로부터 양수 확인서를 받아 제출)

⑤.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물건 또는 자산에 표기된 가맹본부의 서비스표 및 영업표지의 완전한 제거 또는 폐기(홍페이지, 기타 홍보물 등)

나) 귀하가 가) 에서 규정한 사항을 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 계약만료 익일부터 제1항의 종료를 확인 받을 때까지 계속 제18조의 기준에 따른 상표사용료의 3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당 상표사용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 당사는 가) 의 종료 확인(A/S등 피해분쟁 완료 포함) 후 2개월 이내에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보증금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KGB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 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KGB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설비, 상품, 원재료나 부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1) 당사는 KGB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골드이사	KGB의 규정 상표가 도색된 차량, 포장자재, 유니폼 사용	절차에 따라 계약의 해지 가능	
로얄이사			
디렉스이사			
일반이사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가맹본부와 협의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제한 없음	포장이사	가맹본부와 협의되지 않은 부가상품판매	1. 위반 시 고객과 분쟁 발생 금액 전부를 가맹 사업자 가 책임 2. 절차에 따라 계약의 해지 가능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용역의 가격(포장이사 요금)을 일반 시장 가격과 대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높은 가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보호 제도 유무와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포장이사	KGB, yes2404	yes2424, Ycap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읍,면,동)당 또는 행정구역 (읍,면,동) 일부마다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거리기준은 없음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 제시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 수행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다만, 이사사업은 지역을 국한하기 어렵고 영업지역 보호가 어려운 업종임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외에서의 영업이나 광고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가맹점사업자 상호간 구체적인 침해 행위가 없는 경우 상호 양해하기로 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영업지역과 별개로 전화인입지역(해당 전화인입 지역 내 거주 고객의 이사 문의 건을 해당 전화인입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우선 연결해주는 지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 문의를 해당 가맹점에 우선 연결해주고 해당 전화인입 지역 내에서 영업이나 홍보의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독점적인 영업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2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2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KGB 가맹점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귀하와 본사가 계약 만료일까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동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중 발생한 미수금은 전액 완납하여야 하며, 귀하가 갱신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지신청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 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 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제1항 제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 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 제1항 제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허가의 취득에 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0조 제1항 제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30조 제1항 제4호
○ KGB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 은 경우	제30조 제1항 제5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 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0조 제1항 제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월 상표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1호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관청의 자격요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2호
3. 이사 서비스품질 기준을 3개월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3호
4. 노후화 장비(차량, 자재 등)의 교체나 보수(차량도색을 포함한다.)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4호
5. 작업 중 규정된 복장과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영업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5호
6. 이사고객과 체결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직접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고객에게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이사당일 이사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이사핑크를 연 1회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6호
7. 이사고객에 대한 A/S 처리를 연 3회 이상 고의로 지연 또는 회피 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7호
8. 서비스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고객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등 브랜드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제31조제1항 제8호
9. 영업지역, 영업표지물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9호
10. 의무 교육(특별교육 포함)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참석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10호
11. 계약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 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제1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제31조 제2항

개시된 경우	제1호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31조 제2항 제2호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1조 제2항 제3호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31조 제2항 제4호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제2항 제5호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제2항 제6호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1조 제2항 제7호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1조 제2항 제8호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1조 제2항 제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여건이나 가맹점관리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서 수정 동의에 따른 별도의 추

가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경제여건이나 가맹점관리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제42조제2호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자세한 사항은 사업운영부에 문의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

은 교육비, 보증금 등 당사에서 요구하는 가맹금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을 원할 경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당사가 요구하는 신규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 당사의 승인 하에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내용 중 특약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업무위탁 또는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상속인이 가맹점 운영능력이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 1개월 이내 관련서류 제출	상속 개시 후 동일한 권리 관계로 재계약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신청 → 당사 승인 → 관련서류 제출	
업무위탁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위탁 범위 내 가맹계약상 권리 의무	신청 → 당사 승인 → 관련서류 제출	가맹점사업자의 본사 및 고객에 대한 책임은 유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KGB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포장 및 일반이사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자세한 절차는 사업운영부에 문의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KGB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최소 4명 이상 (5톤 1대당)	근무현장 확인 및 품질 확인(간접 근무)	가맹점 관리 사원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대리점)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팀	비고
브랜드관리	참여도	대리점 실사 (체크리스트작성) /사진촬영/본사송부	부정기	가맹본부 담당자 본사 임직원	
	유니폼				
	차량				

	자재사용			외부 현장 품질평가단	
고객서비스	성실성	수시 현장실사	부정기		
	친절도				
	팀워크/홍보				
고객만족	서비스품질	고객 제보 및 해피콜	월 정기	고객지원센터	
	고객만족도				

당사는 관리,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의 서비스품질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리점별 홈페이지의 이사 업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는 규정준수 여부, 단계별 서비스 내용 등을 이사 현장에서 체크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징계 및 포상, 재계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KGB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가맹본부 주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부담비율과 광고 및 판촉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가 관할지역에서 자체 광고 및 판촉을 하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 자체 비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가맹본부부담	가맹점사업자부담		
가맹본부 주도 광고, 판촉행사	협의결정	협의결정	협의 결정 예정	
가맹점사업자 자체 행사	가맹사업자 전액 부담		없음	

<기업이전 대리점의 경우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귀하는 가맹점사업자는 타 기업이전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당사에 광고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광고업체 선정 및 광고내용에 대하여 당사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나) 위와 같이 광고를 위탁하는 경우 귀하 및 타 기업이전 가맹점사업자의 매월 공동광고비분담, 공동광고기간 등 세부내용은 기업이전 가맹점사업자 와 당사의 별도 협

약서에 의하며, 공동광고비 미납으로 인한 당사의 광고 중단에 대하여 귀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맹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 공동광고 등

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및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나)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의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비율 및 부담 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광고의 목적 · 횟수 · 시기 · 매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동의를 받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광고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의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비율 및 부담 한도 등 세부사항을 고지합니다.

라) 전국단위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 동의 또는 사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 간의 개별 부담액은 각 가맹점사업자의 상표사용료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마) 가맹본부는 각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매월(또는 분기) 지정 기일까지 청구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지정 기일까지 지급합니다.

바)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사) 가맹점사업자가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 광고단가 등 세부 산출 근거가 포함된 광고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사업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이 사서서비스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가맹계약서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에 2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하는 경우 (보충교육을 참석한 경우는 제외) 20만원 이하의 위약금

나) 가맹계약서 제21조 제11호에 따른 표준요금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이사고객에게 과다요금(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 통념적 시장가격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요금을 의미한다)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브랜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사요금의 20% 이하의 위약금

3) 가맹점사업자는 당사 또는 당사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고용인 포함)가 식비, 음료비, 수고비 등을 고객에게 요구하여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취한 금액(식사, 음료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공 금액)의 2배액을 고객에게 보상하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과장 정보제공), 제12조제1항제1호(불공정 거래행위) 및 제12조의5(보복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갑” 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추정기간임)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 비용
합계		45일 내외	정보공개서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D-45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9~36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IBK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	D-25	
개설 준비	- 시설 및 장비 구입/차량 도색 - 각종 제출 서류 준비	D-20	
준비상황 점검	- 시설 및 장비, 차량 도색 완료 확인 - 각종 서류 제출	D-10	
교육실시	- 신규 가맹사업자 교육실시	D-10~1	
사업 개시	-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의 경우 점포환경개선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장비의 노후 개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이사고객에게 고품격 이사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장비(차량, 자재, 유니폼)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상시 도색의 선명성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시설장비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차량의 안전과 이미지 유지 등 가맹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인 점을 감안,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서비스)활동에 대한 지도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자체기준에 의거	계약을 저하, A/S빈발, 서비스품질 불량	1차 : 이사현장 방문 서비스 전 과정, 계약진행 과정, A/S처리 과정 체크 2차 : 사업자 면담 현장방문 시 확인한 사항을 대리점사업자에게 설명 및 교육	가맹본부 부담	문의 : 사업운영부
가맹점 사업자의 요청	A/S처리 방법 계약을 증진방안 관련법령 이해	가맹본부 사무실 방문 -사항별 현황 및 방안 설명 사례중심 교육 현장실습 - 우수 대리점 이사현장 실습	가맹본부 부담	문의 : 사업운영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KGB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연간 교육	서비스매뉴얼, 세무, 노무, 법무, CS, 교양 등 연간 120여회	조건 없음	가맹계약 기간	본사 교육장 참석 교육/ 동영상 강의 수강 기회 제공	
창업자 개별 경영지도	경영부진 가맹점 개별 면담을 통한 자문 및 교육	희망 가맹점	가맹계약 기간	창업자 성공 노하우 전수	
우수가맹점 견학	우수가맹점 견학	희망 가맹점	가맹계약 기간	우수 가맹점 견학 및 학습 기회 부여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최초 교육	신규교육	브랜드 이해, 서비스 품질방침, AS처리 방법, 계약을 증진방안, 광고 홍보 방안, 홈페이지 활용방법 등	강의	영업개시 전 1회	필수 교육
	현장실습 교육	이사현장 실습	현장실습		
정기교육		서비스 품질교육	강의	연 2~6 회	필수 교육
보충교육		서비스 품질교육	강의	연 2~6 회	정기교육 불참시
맞춤형 교육		특정 주제별 교육 (서비스 매뉴얼, 견적방법, 계약율 향상, A/S 처리방법 등)	강의	필요시	연중(일정고지) 필수 또는 자발
특별교육		이사서비스 품질 저하, A/S다발, 법령개정이나 주요 방침변경 전달, 이사현장학습등	강의 외 현장학습	필요시	필요시 교육

※ 교육별 정의

1) 최초 교육은 사업개시 전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최초 교육에서는 브랜드에대한 이해, 서비스 품질 방침, AS처리 방법, 계약을 증진방안, 광고, 홍보 방안, 홈페이지 활용방법, 이사현장 실습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정기교육은 가맹본부가 이사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3) 맞춤형교육은 특정 가맹점사업자별(서비스 등급별, 가맹 기간별 등) 또는 권역별, 특정 주제별(서비스 매뉴얼 기본, 견적 방법, 계약을 향상, A/S 처리 방법, 재이용 및 소개 고객 창출 등)연간 교육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해당 교육이 필요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4) 특별교육은 이사서비스 품질 저하, A/S다발 가맹점 대상(품질개선 특별교육, 이 경우 해당 팀원 전체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또는 법령 개정이나 주요 방침 변경 전달 등 비정기적으로 특별히 실시하는 교육(일반 특별교육)을 말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KGB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최초 교육	신규 교육	2일 15시간	최초가맹금에 포함	최초 교육은 영업개시 전
	현장실습	8~112시간		
정기교육		2시간~3시간(회당)	33(매월 정기)	연 2~6 회
보충교육		2시간~3시간(회당)		연 2~6 회 정기교육 불참시
맞춤형 교육		1~8시간		연중(일정고지)
특별교육		2시간 내외	33(교육 시 마다)	필요시 교육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제1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교육비 포함)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필수) 또는 맞춤형 교육을 연간 기준으로 6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가맹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교육 횟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는 교육횟수와 지출비용에 따라 매년 재 산정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가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사업자 소속 종업원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 불참 시에는 가맹점 평가 등에 있어 감점의 요인이 되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고객센터 배정등 오더배정 제한조치 및 연속 2회 불참 시 300,000원 이하의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교육(정기교육, 특별교육, 맞춤형 교육 중 의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 하며 보충교육 또는 추가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KGB 사업팀(031-799-315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